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03호 2017. 7. 26.(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7-86호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 창의사업 기본계획 승인 3
- 거창군 고시 제2017-95호 도로명부여 고시 4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849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
- 거창군 공고 제2017-850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 거창군 공고 제2017-851호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5
- 거창군 공고 제2017-855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35
- 거창군 공고 제2017-859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46
- 거창군 공고 제2017-865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66
- 거창군 공고 제2017-866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4
- 거창군 공고 제2017-868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81

회 람									
--------	--	--	--	--	--	--	--	--	--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5년착수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기본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거창군수

1. 사 업 명 :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2. 사업의 목적 : 거창군의 큰 자원인 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힐링지대 거창”이 지자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
3. 사 업 구 역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수리 일원
4. 사 업 규 모 : 행정리 2개, 자연마을 10개
5. 면 적 : 51ha(대지 및 농경지 3ha, 임야 48ha)
6. 가구 / 인구 : 213호/435명
7. 사 업 비 : 1,510백만원(국 1,057, 도 136, 군 317)
8. 사업의 효과 : 지역이 지닌 자산인 자연자원을 지역민이 활용하여 자연 치유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임야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줌
9. 사 업 기 간 : 2015년 ~ 2018년(4년간)
10. 시 행 자 : 거창군수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
12. 주요사업개요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치유의 마당 조성
 - 나. 지역소득 증대 : 힐링센터
 - 나. 지역경관개선사업 : 달빛산책로 정비
 - 다.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 개발담당(☎940-8256)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7. 2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127 외 5건(부여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83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로 964-6	2011-12-07	2017-07-26	감악산을 넘어 가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488-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127	2009-04-01	2017-07-26	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라 이름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04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135-150	2009-04-01	2017-07-26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43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병곡길 413	2009-12-28	2017-07-26	북상면 산수리와 병곡리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2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상감약길 508	2009-04-01	2017-07-26	감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42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오류동길 58-10	2009-04-01	2017-07-26	풍수설에 마을 터가 버들가지에 꺾꼬리가 둥지를 짓는 유지생소 형국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2. 제정이유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인상함.(별표 2, 별표 4)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7. 7 . 21 . ~ 2017. 8 . 10 .

5.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수도사업소 **☎055-940-8413**, Fax055-940-8409 또는 메일 **kalbalism@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인상함.(안 별표 2, 별표 4)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안 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07.21 ~ 2017.08.10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610	<u>640</u>
	2~30	810	<u>850</u>
	31이상	1,060	<u>1,110</u>
일반용	1~30	760	<u>800</u>
	31~50	920	<u>970</u>
	51~100	1,070	<u>1,120</u>
	101~300	1,230	<u>1,290</u>
	301이상	1,380	<u>1,450</u>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710	<u>750</u>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밀리미터)	금액(원)	
	현 행	개 정 안
13	860	<u>900</u>
20	2,430	<u>2,550</u>
25	3,900	<u>4,100</u>
32	6,950	<u>7,300</u>
40	11,720	<u>12,310</u>
50	17,970	<u>18,870</u>
75	43,600	<u>45,780</u>
100	74,340	<u>78,060</u>
150	161,970	<u>170,070</u>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사. <u>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u>	<u>1년차</u>	<u>30퍼센트</u>
	<u>2년차</u>	<u>20퍼센트</u>
	<u>3년차</u>	<u>10퍼센트</u>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 이후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도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5호, 2017.4.11., 일부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본조신설 2010.11.2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2. 제정이유

-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한시적 요금감면대상을 추가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안 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

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매월 청소실적 보고, 분뇨수거 요청시 24시간내 수거 삭제

○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7 . 21. ~ 2017. 8 . 10.

5.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수도사업소 【☎055-940-8413, Fax055-940-8409 또는 메일 kalbalism@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한시적 요금감면 대상을 추가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안 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

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매월 청소실적 보고, 분뇨수거 요청시 24시간내 수거 삭제
-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7조·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07.21~2017.08.10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별표 1,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로 본다.

제3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u>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대행업자는 분뇨 수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24시간 내 수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인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수거하여야 한다.</u></p>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u>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 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p>	<p>현행 제2항과 제3항은 법률에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계약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제6호 및 제7호에 신설함 (계약은 상호 협의 가능한 사항으로 규제개선 취지에 문제없음)</p> <p>준용 규정 구체적으로 표기</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130	<u>140</u>
	21~30	180	<u>190</u>
	31이상	240	<u>250</u>
일반용	1~30	160	<u>170</u>
	31~50	200	<u>210</u>
	51~100	240	<u>250</u>
	101~300	280	<u>290</u>
	301이상	340	<u>360</u>
산업용	1톤당	160	<u>170</u>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사. <u>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u>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 이후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1.19., 타법개정]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크(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5. 입법예고 기간 : 2017. 7. 21. ~ 2017. 8. 10.(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055-940-3632, fax 940-362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940-36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7. .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을 정함.

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적용함.

다.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라. 포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일 이상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분석 의뢰

(6) 도내 조례 제정 현황

○ 제정완료(8): 창원시, 함양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산청군, 고성군

○ 입법예고(1): 창녕군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거창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 관련조문: 제3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14	14	14	14	56
세출	국 비						
	군 비		14	14	14	14	56
	소계(a)		14	14	14	14	56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군 및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지원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및 군 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 14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관련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의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보완요청 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조직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
 -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심의사항 삭제
 - 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통합방위예규 적용규정
-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다.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에 반장을 포함한 2~3명의 반원으로 구성

※ 경상남도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요청 사항.

4. 입법예고기간: 2017. 7. 24. ~ 2017. 8.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629], 전화[940-3774] 또는 E-mail[dorakrd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 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안전총괄과)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7. .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경상남도의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보완요청 사항과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조직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

-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심의사항 삭제
- 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통합방위예규 적용규정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다.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에 반장을 포함한 2~3명의 반원으로 구성

※ 경상남도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요청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8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7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7. 24 ~ 2017. 8. 13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후 반영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고성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를 “제5조 및 제9조”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를 “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 20명 이내로”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u>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거창군 <u>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심의사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u>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u>위원 20명 이내로</u>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6. (생략) 7. <u>진주보훈지청장</u> 8.~10. (생략)</p>	<p><u>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제5조 및 제9조-----<u>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u>-----</p> <p>제2조(심의사항) ----- -----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20명 이내의 위원으로</u> ----- ----- ② ----- ----- 1.~6. (현행과 같음) 7. <u>경남서부보훈지청장</u> 8.~10. (현행과 같음)</p>	<p>제명의 대표성을 위하여 “등”을 붙임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규정 신설(경상남도 안전정책과 -5166호(15.09.25.))에 따라 문장 정비함.</p> <p>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삭제</p> <p>문맥에 맞게 수정</p> <p>조직 명칭변경 반영</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u>자</u> ③~⑦ (생략)</p> <p><u>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u>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p> <p>② <u>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u> 부군수가 되고, <u>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u> 읍·면장이 된다.</p> <p>③ <u>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u>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p> <p>④ <u>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u></p> <p>⑤ <u>상황실은 실장과 10명 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u></p>	<p>11. -----<u>사람</u> ③~⑦ (현행과 같음)</p> <p><u>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u>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이하 “<u>각 통합방위 지원본부</u>”라 한다)</p> <p>② <u>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u> <u>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의 본부장-----</u> <삭제></p> <p>③ <u>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u> 1. <u>군 통합방위 지원본부</u> 가. <u>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u></p>	<p>용어 순화</p> <p>○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추가규정 신설로 편의상 약칭표현</p> <p>○ 법령 용어에 맞게 띄어쓰기 함</p> <p>○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7조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 중복 재 기재사항으로 삭제</p> <p>○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내용 신설로 군 지원본부와 각 호로 구분하여 기술함</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⑦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p> <p>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p>	<p>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p> <p>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p> <p>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p> <p><삭 제></p>	<p>○영 제18조제4항 위임 사항</p> <p>○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아님(군 부대 규정을 조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p> <p>16.10.26. 거창군 통합방위예규 수립(거창대대 작성)</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u>협의회</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u>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현행 제7조제7항 사항 이동 통합기술함.</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조례 제1조)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조례 제3조)

-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조례 제4조)

라. 기금은 용도별로 관리, 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함(안 조례 제5조)

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정함(안 조례 제8조 ~ 제10조)

바.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조례 제12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규칙 제1조~제12조)

4. 제정조례 및 규칙안 : 붙임

- 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 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정안

5. 입법예고 기간 : 2017. 7. 25. ~ 2017. 8. 14.(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055-940-3092, fax 940-308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 940-3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규칙 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2조)

-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3조)

-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기금은 용도별로 관리, 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 노인복지사업 : 군내 노인관련 단체
- 양성평등사업 :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 등
- 자활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바.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2조)

사.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3조)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일이상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중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3. 자활지원사업

제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용도별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노인복지사업

제8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1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양성평등사업

제9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2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내 단체로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단체
3. 그 밖에 양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3조제2호의 양성평등 실현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사업의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양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단체의 국제교류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 사항

제4장 자활지원사업

제10조(지원대상 및 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4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사업 자문에 대해서는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11조(자활기금의 용도) 자활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용도별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 및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한 사회복지기금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상호융통)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간 상호 융통금액은 500만원 이상일 때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사업의 효율성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

군수는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포기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
4. 이 규칙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장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제7조(지원신청)

노인복지사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정관
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3장 자활지원사업

제8조(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용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9조(기금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9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용자를 할 수 있다.

제10조(상황 및 상환방법)

① 자활지원사업의 용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개시

제11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용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자금의 감면)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한 사회복지기금 자금은 이 규칙에 따른 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규칙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5.4.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채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

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1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건 17-010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7. 5. 18.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11년 5월 26일 영등포구 조례 제841호로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제4조)을 두었는바, 이 사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경과 후 영등포구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인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사례 참조).

살피건대, 영등포구조례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영등포구조례가 시행된 날인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17년 1월 1일에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금의 근거로서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같은 조례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례를 실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두어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조례의 실효를 위한 목적으로는 반드시 형식적인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영등포구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 월 26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아림예술제, 아림예술제위원회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원: 국가나 지자체 출연금·보조금,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등

- 용도: 아림예술제 행사, 아림예술제 진흥사업 등

마. 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
 -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기금 지급 및 결산보고
- 바. 아립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제13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4. 입법예고기간 : 2017. 07. 26. ~ 2017. 08. 15.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8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문화관광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joeun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립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립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는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립예술제 행사 잉여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립예술제 행사
 2. 그 밖에 아립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예술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 지급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아림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림제위원회에 자금을 지급한다.
② 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외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회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제3장 결산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 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제정]

제3장 결산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7-866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거창군수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상’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감사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062, 팩스: 055-940-3029

이메일: iron7979@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붙임: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상’으로 개정함.

○ 근거: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7.26.~8.16.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중

(6) 도내 개정현황

완료(10): 밀양,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함양, 합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명”을 “19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u>200명</u>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190명</u>----- -----</p>	<p>「지방자치법」 제16조의 위임범위에 맞게 개정</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2017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 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는 제16조로 변경. 또한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수정하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200명 이하로 변경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사항 명시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기재 사항 삭제(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함(안 제7조).
-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7. 26. ~ 2017. 8. 16.(20일간)

5.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512**, Fax055-940-3759 또는 메일 mlee30@korea.kr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055-940-35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7. .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 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사항 명시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안 제2조, 제3조)
- 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기재 사항 삭제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조, 제9조, 제50조, 부칙 제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49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7. 26. ~ 2017. 8. 16.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후 반영
 - (6) 도내 입법 예고중: 진주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를 자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u>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u>그 자금운용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p> <p><신 설></p> <p>제3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제한에 따라 경작자가입은 손실보상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p>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u>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u>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2조(설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
3. 법 제8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7.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8.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9.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10.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11.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1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신 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를 자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삭 제>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를 자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삭 제>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결산 및 보고등)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자금운용계획서를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와 자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7조(준속기한) 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